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Ⅰ 위원회 구성 개요

□ 설치 목적

ㅇ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및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특별위원회)에 따라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 내 초·중등교육을 받는 학생의 학력 향상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구성된 것임.

□ 주요 기능

ㅇ 서울시·교육청의 학력향상·기초학력보장지원 대책 전반에 대한 점검 및 평가

- 서울시의 '서울런(Seoul Learn)' 운영 및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 추진 등의 점검 및 평가
-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희망교실, 단위학교 기초(기본)학력 책임지도제 등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평가

ㅇ 서울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

- 기초학력 진단체계 전반의 체계화, 기초학력 보장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학생 학력 향상을 위한 서울시-자치구-교육청 등의 연계 강화 등을 위한 대책 마련 등

□ 구성 경위

ㅇ ('22.7.6.) 최호정 의원 등 76명,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안번호 제13호)」을 공동 발의

ㅇ ('22.8.4.) 제31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

ㅇ ('22.8.5.) 제31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 및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의안번호 제52호)」을 원안대로 의결

- 구미경 의원 등 15명 선임(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5명)

ㅇ ('22.9.13.) 제313회 임시회 폐회중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이경숙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이승복·이용균 의원을 선임

□ 위원회 현황

ㅇ 활동기간 : 2022. 8. 5. ~ 2023. 8. 4. (1년)

※ 2022년 12월 22일,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의안번호 제405호)」에 따라 활동기간이 6개월 연장되었음.

ㅇ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명단

직 위	위원명	소속위원회	지역구	소속정당	비고
위원장	이경숙	교통위원회, 운영위원회	도봉1	국민의힘	
부위원장	이승복	교통위원회	양천4	국민의힘	
부위원장	이용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강북3	더불어 민주당	'22.12.22. 사임

ㅇ 위원 명단 : [붙임 1] 참조

※ 2022년 12월 22일,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의안번호 제408호)」에 따라 5명의 위원이 사임하였음.

- 이용균 부위원장(강북 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 박강산 위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 박유진 위원(은평 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 성흠제 위원(은평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 왕정순 위원(관악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Ⅱ 위원회 주요 활동

□ 제1차 회의 개최

ㅇ 일시 : 2022. 9. 13. (화) 오전 11시

ㅇ 장소 : 제1대회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ㅇ 안건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ㅇ 회의 사진

□ 제2차 회의 개최

ㅇ 일시 : 2022. 10. 11. (화) 오전 10시

ㅇ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ㅇ 안건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교육 학력향상 관련 업무보고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 서울특별시 서울교육 학력향상 관련 업무보고 (평생교육국)

ㅇ **회의 주요 내용**

- 기초학력 협력 강사 운영을 비롯한 기초학력 보장지원 정책 확대, 학령인구 감소 대비 교육재정 증가 속에서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한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
- 학력 향상 대책의 성과와 개선 방향 등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정의적 특성뿐만 아니라 과목별 학력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제안
- 서울시의 서울런(Seoul Learn)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홍보비용이나 추진 상황 대비 효과성이 낮다는 일부 의견이 있으므로,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
- 시의회에서 지난 8월, 「2022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편성된 '초·중·고 각 1개 학년의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시행' 관련 30억 원의 예산을 의회 의결 취지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수정할 것을 요청

ㅇ **회의 사진**

□ 간담회 개최

ㅇ 일시 : 2022. 11. 25. (금) 오후 5시

ㅇ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ㅇ 주요 참석자

- (시의회) 이경숙 위원장, 이승복 부위원장
- (교육청) 중등교육과장 안윤호, 초등교육과 장학관 장경아

ㅇ 안건

-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시행을 위해 서울시의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한 '컴퓨터기반학업성취도평가지원' 예산의 집행계획 및 기초학력 보장지원 정책 관련 주요 현안 사항 보고

ㅇ 회의 주요 내용

- (이경숙 위원장)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학력평가 예산 집행이 서울특별시의회 의도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고를 요청하고, 학업성취도평가 계획이 수립되는대로 별도 보고를 요구
- (이승복 부위원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력평가를 포함하여 시민에게 학생의 학력 수준을 쉽게 알 수 있는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학력평가 결과 공개 방법에 대한 검토를 당부

□ 제3차 회의 개최

ㅇ 일시 : 2022. 12. 8. (목) 오전 9시

ㅇ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ㅇ 안건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ㅇ 회의 결과

- 2023.8.3.까지 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할 것을 결의
- 위원회안(위원장 제안)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93호)」을 제안

ㅇ 회의 사진

□ 제4차 회의 개최

ㅇ 일시 : 2023. 2. 14. (화) 오전 10시

ㅇ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ㅇ 안건

- 2023년도 서울런 추진계획 보고
- 2023년 명시이월 된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지원 예산의 집행계획 보고
-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 조례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붙임 2] 참조

ㅇ 회의 주요 내용

- 서울런 활용에 있어 코딩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대학생(또는 대학원생) 멘토링 참여자의 참여 동기가 함양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제언
- 서울런 추진에 있어 자치구와의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예산의 중복 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
- ‘컴퓨터기반 학업성취도 평가지원’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시의회가 당초 제안한 취지나 목적과 상이한 측면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

- 학력 저하에 대한 객관적 평가, 학습 수준에 대한 불안으로 야기되는 사교육 수요 완화 등을 위해서는 성적 공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컴퓨터기반 학업성취도 평가지원’ 예산에 따라서 추진되는 평가는 교과를 기반에 두고 결과까지 공개하는 형태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전향적인 검토를 주문

- 위원회안으로 제안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55호)」와 관련하여 사전에 교육청이 제출했던 검토 의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 공개가 유발할 수 있는 문제를 과도하게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

  →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시의회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조례안 제7조에 대하여 상위법 충돌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안 제7조와 제13조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안

  → 위원회는 동 안건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의결

ㅇ 회의 결과

- 위원회안(위원장 제안)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55호)」을 제안

ㅇ 회의 사진

□ 제5차 회의 개최

ㅇ 일시 : 2023. 6. 12. (월) 오전 10시

ㅇ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ㅇ 안건

- 2023년 명시이월 된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지원’ 예산의 집행현황 보고

ㅇ 회의 주요 내용

-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면서도 시의회가 결과 공개와 과목별 평가를 전제로 편성한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교육청의 예산 집행 계획에 대해 문제 제기
- 평가 도구 개발과 관련한 용역비 예산이 두루뭉술하게 잡혀 있다는 문제가 있으며, 교육청이 법률을 이유로 들어 결과 공개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동 평가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의견 개진
- 공교육에 대한 신뢰 저하, 기초학력 부진 학생 심화 등의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제대로 된 평가와 결과 공개가 필요하다는 특위 차원의 공통된 인식을 전달
- 예정되었던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교육청 조직 개편 중 기초학력과 신설 계획 보고의 건)은 별도 일정을 잡아 진행

ㅇ 회의 사진

□ 제6차 회의 개최

ㅇ 일시 : 2023. 7. 7. (금) 오전 10시

ㅇ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ㅇ 안건

- 2023년 명시이월 된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지원’ 예산의 집행현황 보고
-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관련 조직개편 보고

ㅇ 회의 주요 내용

-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평가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가 제기해왔던 본래 취지와 목적(학년별 전수조사, 과목별 평가, 시험성적 결과의 지역별 공개 등)을 고려하여 참여학교의 확대, 용역 기간 단축 및 예산 산출내역 구체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 학력 향상이나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그간 여러 정책이 추진됐으나 기초학력 부진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진단평가 시행을 비롯하여 적극적인 대책 강구를 요구
- 진단평가와 결과 공개에 따른 학교 서열화 우려, 경쟁 심화 등에 대해 교육청의 입장과 다른 입장도 분명히 존재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것을 주문

ㅇ 회의 사진

□ 제7차 회의 개최

ㅇ 일시 : 2023. 7. 20. (목) 오전 11시

ㅇ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ㅇ 안건

–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ㅇ 회의 사진

□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추진 관련 주요 활동

ㅇ 기간 : 2023. 2. ~ 2023. 5.

ㅇ 주요 활동 사항

–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23.3.10.)에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찬반토론 진행

※ 이경숙 위원장 제안설명, 문성호 위원 찬반토론 참여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23.4.3.)한 동 안건에 대하여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3.5.3.)에서 찬반토론 후 재의결

– 재의결된 동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23.5.15., 이경숙 위원장 참석)

– 동 안건에 대한 의결 및 재의결, 대법원 제소에 대한 언론 대응 등

('23.2. ~ '23.5., 상시)

※ 배포된 보도자료 원문은 [붙임 3] 참조

ㅇ 활동 사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23.3.10.)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찬성토론('23.3.10.)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23.5.15.) - 1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23.5.15.) - 2

Ⅲ 활동 성과 및 향후 계획

□ 주요 활동 성과

ㅇ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컴퓨터기반 학업성취도 평가 지원’ 예산 30억 원의 편성·집행에 관한 지속적인 의견 개진 등을 추진하여 ‘서울형 기초학력 보장 지원체계’ 마련에 노력

–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현황 및 결과의 공개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지역 기초학력지원센터와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의체, 학습지원 대상학생의 보호자에 관한 교육·상담 등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기초학력 보장 지원체계의 내실화를 유도

※ 현재 동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2023쿠4)됨에 따라 2023년 5월 31일부터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사건(2023추5054)에 관한 본안판결 시까지 효력이 정지

– ‘컴퓨터기반 학업성취도 평가 지원’ 예산으로 확보된 30억원을 통해 금년 중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 평가’ 시행 예정

※ 평가 개요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료, 2023.7.)

- 평가시기 : (예비검사) 2023.8. (본검사) 2023.11.
- 평가대상 : 4개 학년군(초 3~4, 초 5~6, 중 1~2, 중3~고1 학년군)
- 평가방식 : 영역별 40문항 내외, 오프라인 평가(영역별 2차시, 80~100분)
- 평가결과 활용
  - 문해력, 수리력 수준의 수직척도 점수 제공
  - 학년군 내 4단계 성취 수준 제공(학년별 북마크 기준 설정)
  - 문해력, 수리력 하위 영역별 수준 제공(3단계)
- 평가내용
  - 문해력 : 학습과 삶의 맥락에서 다양한 내용(교과 내용)과 형식(매체·장르 포함)의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맥락에 맞게 표현하는 능력
  - 수리력 : 학습과 일상을 포함한 다양한 상황에서 수학의 내용과 방법을 활용하여 추론 및 의사결정, 문제 해결을 하는 능력

○ 위원회 차원에서 기초학력 보장지원 대책 강화를 주문함으로써 '23년 7월 1일자로 서울시교육청 조직개편을 통해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 신설에 기여

– 기초학력 보장지원 관련 조직개편 현황 (전담부서 신설)

< 조직 개편 전 >		< 조직 개편 후 >
초등교육과(4)	▶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5) (신설)
초등교육과정		기초학력기획 (이관, 재편)
기초학력 · 방과후학교		기초학력운영 (신설)
초등인사		교수학습·평가 (이관, 재편)
초등교육 · 돌봄지원		독서·외국어·IB교육 (이관, 재편)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 (신설)

○ 서울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 저하 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에 이바지

– KBS('23.3.10.), EBS('23.3.13.), SBS·연합뉴스TV('23.5.9.)를 비롯하여 다수 언론에서 관련 보도가 진행

<< 특별위원회 활동 관련 주요 언론 보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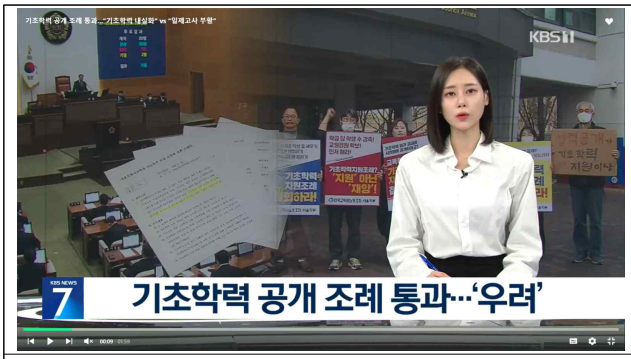

기초학력 공개 조례 통과…"기초학력 내실화" vs "일제고사 부활"(KBS, '23.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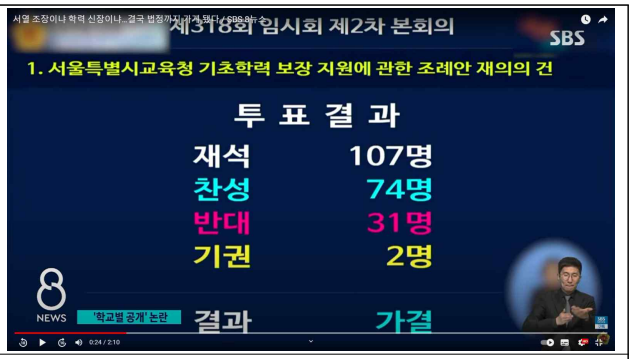

서열 조장이냐 학력 신장이냐…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다(SBS, '23.5.9.)

서울 학생 기초학력 공개조례 통과 …시교육청 '불복'(연합뉴스TV, ‘23.5.9.)	서울, 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에 "서열화 우려"(EBS, ‘23.3.13.)

– 특히, 특별위원회 활동이 언론 사설을 통해 다뤄짐에 따라 기초학력 부진 문제를 비롯한 학력 향상 관련 사안 전반이 사회적 의제로 부상

※ 문화일보·동아일보(‘23.5.16.), 한겨레신문(‘23.5.15.), 경향신문(‘23.5.9.), 조선일보(‘23.7.5.) 등

<< 특별위원회 활동 관련 언론 사설 >>

朝鮮日報 구독 **[발언대] 서울 학생 기초학력 공개 금지, 명분 없다** 입력 2023.07.05. 오전 3:03 기사원문 서울 초·중·고교 기초학력 진단검사 성적을 외부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최근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학교별 성적이 공개될 경우 학교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신청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는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학생을 공부시켜 달라는 시의회 의견을 시교육청이 반대해 조례 제정을 막겠다니, 주객(主客)이 전도된 느낌이다. 시교육청은 소극적으로 조례 제정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경향신문 구독 **[사설] 비교육적인 기초학력 공개, 시 조례로 할 일 아니다** 입력 2023.05.09. 오후 8:41 기사원문 서울시교육청이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를 명시한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위법이라며 9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이 조례안은 학교에서 실시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고, 교육감이 관련 내용을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당초 지난 3월10일 시의회에서 가결됐다. 시교육청이 반발해 재의를 요구하자,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의 69% 찬성으로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발언대] 서울 학생 기초학력 공개 금지, 명분 없다(조선, ‘23.7.5.)	[사설] 비교육적인 기초학력 공개, 시 조례로 할 일 아니다(경향, ‘23.5.9.)
동아일보 구독 PICK **[사설]서울교육청 기초학력 공개 반대, 학부모 알 권리 침해다** 입력 2023.05.16. 오전 12:01 수정 2023.05.16. 오전 8:51 기사원문 초중고교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외부 공개 찬반 필요하다 / 구분 / 필요없다 서울시의회 / 주체 / 서울시교육청, 진보 성향 교원단체 등 맞춤형 교육 위해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필요 / 필요성 / 결과 공개보다 지원책에 초점 맞춰야	한겨레 구독 **[사설] 기초학력 저하, 학교 줄세우기로 풀 문제 아니다** 입력 2023.05.15. 오후 6:07 수정 2023.05.15. 오후 6:43 기사원문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5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연합뉴스
[사설]서울교육청 기초학력 공개 반대, 학부모 알 권리 침해다(동아, ‘23.5.16.)	[사설] 기초학력 저하, 학교 줄세우기로 풀 문제 아니다(한겨레, ‘23.5.15.)

ㅇ 교육부의 ‘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의회 차원에서 기초학력 보장지원 정책 강화를 주문함으로써 「국가 교육책임제 실현」에 이바지

- 책임교육학년(초3, 중1) 도입과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참여 확대 추진, AI디지털교과서 등과 연계한 체계적 학습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부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23.6.)에 앞서 선제적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제 추진, 데이터 기반 기초학력 보장 지원체계 구축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
- 이를 통해 지방의회 단위에서 국가가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책임지는 ‘국가 교육책임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했다는 측면에서 국정과제 달성에 이바지

□ 향후 계획

ㅇ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 2023. 8. 4.(금)

-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제320회 임시회 본회의)

붙임 1.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지원 관련 주요 사업 현황 (‘22.7. 기준)

3.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 번호 제555호)

4.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 의견 검토 및 법률자문 결과 요약(‘23.1.)

5. 조례안 재의요구 사유에 관한 검토자료(‘23.5.)

6. 특별위원회 활동 관련 보도자료. 끝.

붙임 1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성 명		상임위	선거구	위원 개선 사항
위원장 (국민의힘)		이경숙	교통	도봉1	
부위원장 (국민의힘)		이승복	교통	양천4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용균	도시계획균형	강북3	2022.12.22. 사 임
위 원 (국민의힘)		고광민	교육	서초3	
		구미경	행정자치	성동2	
		문성호	문화체육관광	서대문2	
		박성연	도시안전건설	광진2	
		송경택	행정자치	비례	
		신복자	기획경제	동대문4	
		이민석	주택공간	마포1	
		이종태	교육	강동2	
위 원 (더불어민주당)		박강산	교육	비례	2022.12.22. 사 임
		박유진	행정자치	은평3	2022.12.22. 사 임
		성흠제	교통	은평1	2022.12.22. 사 임
		왕정순	기획경제	관악2	2022.12.22. 사 임

붙임 2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지원 관련 주요 사업 현황('22.7. 기준)

□ 학생·학교 단위, 학습지원대상학생 대상 사업

ㅇ 서울특별시교육청

연번	사업명	소관부서	사업 주요 내용
1	서울희망교실 운영	기획조정실 (참여협력담당관)	○ 기간 : 2022.2.~2022.12. ○ 규모·대상 : 초중고 총 6,500팀 이상 교원 단위 공모 및 팀별 운영비 300~700천원 내 지원 ○ 내용 :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으로 교원이 교육취약 학생(최소 50%이상) 포함 4~10명의 멘토가 되어 지속적 통합 성장을 지원
2	도담도담 마을학교 공모사업	기획조정실 (참여협력담당관)	○ 기간 : 2022.3.~2022.12. ○ 규모·대상 : 마을학교를 개설하는 마을기관 공모(25개소 내외)를 통해 지방보조금(10,000천원 내외) 지원 ○ 내용 : 기본학력 도움, 정서·심리 지원, 독서활동, 문화예술, 틈새돌봄 등 마을 기관(작은도서관, 마을기관, 청소년 기관 등)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마을학교를 운영
3	인공지능(AI) 튜터 마중물학교 지정·운영	교육정책국 (교육혁신과)	○ 기간 : 2022.3. ~ 2023.2. ○ 규모·대상 : 초중고 20개교 (각종·특수 포함, 교당 1천만원) ○ 내용 : 다문화·탈북 학생, 난독·난산·경계선지능학생 및 학습지원대상 학생 대상 인공지능 튜터 활용 교육 활동 제공
4	기초학력 맞춤형교육선도 학교 지정·운영	교육정책국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 기간 : 2022.3. ~ 2023.2. ○ 규모·대상 : 공립초 36교 (교당 1,000~2,500만원 차등 지급) ○ 내용 : 초 1·2학년 외 타 학년 대상 국어·수학 교과 내 협력강사 운영〔학급당/주당 2시간 이상〕 ※ 전액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
5	서울두드림학교 운영	교육정책국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 기간 : 2022.3. ~ 2022.12. ○ 규모·대상 - 공립초 79교(공모 선정, 교별 4~5백만원 차등 지원) - 공·사립고 60교(공모 선정, 교별 5백만원 내외 차등 지원) ○ 내용 : 복합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단위 학교 차원에서 통합 지원(학습-정서-심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전액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

연번	사업명	소관부서	사업 주요 내용
6	서울기초학력 지원센터 및 지역학습도움 센터 운영	교육정책국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 기간 : 상시 운영 ○ 규모·대상 : 본청 1개소, 교육지원청 11개소 ○ 내용 - (서울) 시행계획 수립, 교원 연수, 지역센터 성과 관리, 집중지원학생(난독·경계선) 지원 등 - (지역) 지역학습도움넷 운영, 학부모·교사 컨설팅 및 연수, 지역밀착형학생통합지원 등 ※ 교육부 특별교부금 1,400,000천원 포함
7	기초학력진단 보정시스템 운영 및 기초학력 지원 강화	교육정책국 (초등교육과)	○ 기간 : 2022.3. ~ 2023.2. ○ 규모·대상 : 초등학교 3학년 ~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교원 ○ 내용 - 3R's 및 교과영역 기초학력 진단검사, 향상도 검사를 위한 시스템(s-basic.sen.go.kr) 운영 - 기초학력 학습자료 및 학습준비도 검사를 위한 기초학력 향상지원사이트 꾸꾸(basics.re.kr) 운영 ※ 인천교육청 주관, 교육부 특별교부금(299,000천원) 사업, 자료개발은 금년부터 대응투자 실시(교육청 25%)
8	초등 교과보충집중 프로그램 (점프업)	교육정책국 (초등교육과)	○ 기간 : 2022.3. ~ 2023.2. ○ 규모·대상 : 국·공립초 567교(전체) - 학급수에 따른 차등 지원(10,500~25,550천원) ○ 내용 : 담임(교과)교사와 학습지원·보충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소규모 그룹(학생 2~10명)을 구성하여 방과후·방학중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학생 맞춤형 교과보충수업을 진행 - 보통 학력 이상 학생 포함, 국·영·수·사·과학 교과 대상 ※ 전액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
9	초등 교과보충집중 프로그램 (키다리샘)	교육정책국 (초등교육과)	○ 기간 : 2022.4. ~ 2023.2. ○ 규모·대상 : 750여팀 (1팀당 6,000천원 이내 지원) ○ 내용 : 희망하는 담임 또는 교과전담교사 등을 키다리샘으로 지정하여 소규모 또는 중규모의 학습지원대상 학생 등의 보충 학습지도,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전액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
10	초 1,2학년 기초학력협력강사 지원	교육정책국 (초등교육과)	○ 기간 : 2022.3. ~ 2023.2. (27주 간) ○ 규모·대상 : 공립초 1, 2학년 전체 학급 ○ 내용 : 정규 교과 시간 내 주당 2시간 국어, 수학 교과 중심기초학력 협력강사 배치를 통한 협력 수업 운영 (협력강사 지원을 위한 컨설팅, 사례 탐구 등 포함)

<table>
<tr><th>연번</th><th>사업명</th><th>소관부서</th><th>사업 주요 내용</th></tr>
<tr><td>11</td><td>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td><td>교육정책국
(초등교육과)</td><td>○ 기간 : 2022.3. ~ 2023.2.
○ 규모·대상 : 공립초 전체
○ 내용 : 기초학력다중지원팀 구성 및 학습지원대상 학생 맞춤형 지원과 모든 학생의 학습 부진 예방을 위한 단위학교 차원 통합지원체계 구축</td></tr>
<tr><td>12</td><td>단위학교
기본학력
책임지도제</td><td>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td><td>○ 기간 : 2022.3. ~ 2023.2.
○ 규모·대상 : 국공립, 사립 중·고등학교 전체(각종학교 포함)
○ 내용
- 교내 다중지원팀 구성, 학습지원대상 학생 지도·지원방안 마련
- 중학교 협력강사제 및 토닥토닥 키다리샘
- 고등학교 토닥토닥 키다리샘 운영
<u>※ 협력강사·키다리샘 교육부 특별교부금 (13,060,000천원) 포함</u></td></tr>
<tr><td>13</td><td>대학생 멘토링
랜선야학 운영</td><td>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td><td>○ 기간 : 기수 당 24주(제4기 기준, ‘22.6.~11.)
○ 규모·대상 : 중·고등학생 900명, 서울 소재 대학교 학생 300명
○ 내용 : 대학생 멘토가 중고생 3명과 온라인 그룹을 이루고, 실시간 쌍방향 화상 플랫폼을 활용하여 학습을 지원하는 자기주도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 국·영·수 중심의 맞춤형 교육 + AI 코딩 추가 지원
<u>※ 전액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u></td></tr>
<tr><td>14</td><td>기본학력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학습코칭 연수
및 자료개발</td><td>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td><td>○ 기간 : 2022.5. ~ 2022.12.
○ 규모·대상 : 중등 교원
○ 내용 : 기본학력 보장을 위한 교원 학습코칭 연수, 서울 중등 학생 맞춤형 학습코칭 자료 개발 및 활용 연수 전개
<u>※ 전액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u></td></tr>
<tr><td>15</td><td>2022학년도
일반고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사업
(일반고
전성시대 2.0)</td><td>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td><td>○ 기간 : 2021.12. ~ 2023.2.
○ 규모·대상 및 내용(세부사업별)
- 고교학점제 도입 대비 일반고 교육역량 제고를 위한 수업 공간, 행정, 교수·학습 전반의 혁신 지원
<table><tr><th>세부사업</th><th>내용</th></tr><tr><td>학생 맞춤형 선택 교육과정 운영</td><td><u>단위학교 교육과정 다양화 및 내실화 지원</u>, 교과특성화 학교·공유캠퍼스 운영·지원 등</td></tr><tr><td>교원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td><td>교원 CDA 역량 강화, 선택 과목 지도 등 직무연수</td></tr><tr><td>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td><td>학점제형 공간 구축, 일반고 교감 워크숍 개최 등</td></tr></table>- 단위학교 교육과정 내실화 지원을 위한 학력 신장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td></tr>
</table>

연번	사업명	소관부서	사업 주요 내용
16	중등 기본학력지원단 구성·운영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	○ 기간 : 2022.4. ~ 2023.2. ○ 규모·대상 : 중등교원 74명(1단장, 5팀) - 컨설팅지원팀, 정책지원·홍보팀, 학습코칭팀, 해외정책연구팀, 교수학습자료·콘텐츠개발팀 ○ 내용 : 중등 기본학력 보장 정책의 학교 현장 정착을 위하여 모니터링과 컨설팅, 교원 연수, 정책연구 등의 활동을 전개
17	초등 영어희망교실 운영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	○ 기간 : 2022.3. ~ 2023.2. ○ 규모·대상 : 공립초 37개교 (희망교, 교당 100만원 이내 권장) ○ 내용 : 영어전담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영어학습 부진학생(6명 내외)과 팀을 구성하여 학습동기 고취 및 영어학습 관련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 ※ 학교자율사업운영제 대상 사업으로 별도 예산 미편성
18	교육자원봉사 지원센터 기초학력교육지원 ·봉사단 운영	평생진로교육국 (평생교육과)	○ 기간 : 2022.4. ~ 2022.11. ○ 규모·대상 : 배움이 느린 초등학생 1~3학년100명 ○ 내용 : 퇴직교원 봉사단이 배움이 느린 학생 대상 주 2 ~ 3회 국어·수학 기초 학습 지도
19	교육자원봉사 지원센터 난독 교육지원단 운영	평생진로교육국 (평생교육과)	○ 기간 : 2022.4. ~ 2022.12. ○ 규모·대상 : 난독증 또는 난독현상으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학생 ○ 내용 : 난독 학생 지도를 위한 전문가 과정 연수를 이수한 퇴직교원 봉사단이 해당 학생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난독 전문 교육용 학습 프로그램 진행

ㅇ 서울특별시

연번	사업명	소관부서	사업 주요 내용
1	서울형 교육플랫폼 '서울런' 운영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 기간 : 2022.6. ~ (계속) ○ 규모·대상 : 소득기준대상(중위소득 50% 이하, 법정 한부모가정 등) 및 학교밖·다문화가족·북한이탈 청소년 ○ 내용 - AI·빅데이터 기반 교육콘텐츠 및 맞춤형 멘토링 제공을 위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 구축

연번	사업명	소관부서	사업 주요 내용
2	고교-대학 연계 인재육성 추진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 기간 : 2022.1. ~ 2023.2. ○ 규모·대상 : 일반계 고등학교 26개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내용 : 대학 인프라를 이용하여 고교에 다양한 진로, 적성교육 제공 - 정규과정과 연계한 교과 심화학습 및 학력격차 완화를 위한 방과후 맞춤형 교육과정 등 제공 ※ 입시·진학, 교과과정 및 비교과(자격증, 독서) 과정 학습 콘텐츠 제공

□ 특정 집단(다문화가정 학생, 학생 선수 등) 대상 기초학력 보장 사업

ㅇ 서울특별시교육청

연번	사업명	소관부서	사업 주요 내용
1	다가치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학생 맞춤형 학습멘토링)	평생진로교육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 기간 : 2022.5. ~ 2022.11. ○ 규모·대상 : 초·중·고 다문화학생 재학교 중 희망교 26교(초 9교, 중 5교, 고12교) ○ 내용 : 멘토(교사)-멘티(다문화학생)간 1:1 맞춤형 학습 멘토링 지원
2	방과후 한국어(KSL)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교육지원센터)	평생진로교육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 기간 : 2022.3. ~ 2022.12. ○ 규모·대상 :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 중 한국어 보충학습을 희망하는 학생 ○ 내용 : 중도입국, 외국인 학생 중 한국어 지도가 필요한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표준 한국어 교재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 운영
3	학생선수 대상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	평생진로교육국 (체육건강문화예술과)	○ 기간 : 2022.3. ~ 2023.2. ○ 규모·대상 및 내용(세부사업별) 세부사업 / 내용 / 규모·대상 학생선수 e-School 운영 / 학생선수들의 대회(훈련) 참가로 인한 수업결손 보충 온라인 학습시스템 운영 / 전국 중·고 452교(학생 9,186명) ※ 전담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학생선수 학습 및 인권교육 지원 / - 학생선수 최저학력 기준 달성을 위한 학업 동기 유발 및 기초학력 신장 - 인권 친화·학습권 보장의 학교운동부 문화 조성 / - 학생선수 학습 지원 운영비 교부(초·중·고 교당 2,000천원) : 43교 - 인권교육 운영비 교부(초·중·고 교당 1,000천원) : 46교 학생선수 독서교육 지원사업 / 학생선수의 독서 생활화를 통한 인문학적 소양 함양 / 초·중학교 41교(학생 935명)

연번	사업명	소관부서	사업 주요 내용
			운영 | | | ※ 세부예산 : (e-School) 48,000천원, (학습 및 인권교육) 188,800천원, (독서교육) 500,000천원
4	직업계고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Hi-JUMP) 운영	평생진로교육국 (진로직업교육과)	○ 기간 : 2022.3. ~ 2022.12. ○ 규모·대상 : 직업계고 학생(교사가 프로그램 활용 안내) ○ 내용 : 직업계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및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온라인 교육 정보 서비스 제공 (http://www.hijump.or.kr)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위탁사업비 시도 분담금

ㅇ 서울특별시

연번	사업명	소관부서	사업 주요 내용
1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 지원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 기간 : 2022.3. ~ 12. ○ 규모·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및 학부모 등 1,200명 (예정) ○ 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만3세~15세)를 위한 한국어, 주요 교과목 방문학습 및 진로·진학 지도 등
2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학습 지원사업	행정국 (남북협력과)	○ 기간 : 2022. ○ 규모·대상 : 서울 거주 만3세~초등학생 탈북민 자녀가 있는 가구 (150명 내외) ○ 내용 : 북한이탈주민 자녀 대상 맞춤형 방문학습 지도 이용료 지원(전담교사 파견, 교육지도 및 맞춤형 수업 기회 제공 등)

□ 기초학력 보장 지원 관련 연수 운영(교육연수원)

연번	연수과정명	유형	계획 인원	연수 시수	운영시기
1	(초등) 한글 책임교육을 위한 수업 역량 강화	원격	600	15	22.01.17 ~ 22.12.16
2	(초등)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활용을 통한 학습부진학생 지도 방안 -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원격	600	15	22.01.17 ~ 22.12.16
3	(초등) 기초학습부진학생 지도의 실제	원격	600	15	22.01.17 ~ 22.12.16
4	(중등) 기초학습부진학생 지도의 실제	원격	600	15	22.01.17 ~ 22.12.16
5	(중등) 배움이 느린 학생의 이해와 지도	원격	600	15	22.01.17 ~ 22.12.16

연번	연수과정명	유형	계획 인원	연수 시수	운영시기
6	(중등) 중학교 국어, 수학 학습부진 학생 교수학습 지원 전략	원격	600	15	22.01.17 ~ 22.12.16
7	(중등) 학습부진학생 지원을 위한 만들기와 놀이 게임으로 배움 이끌기	원격	600	15	22.01.17 ~ 22.12.16
8	(교원공통) 기초 문해력 교육	원격	600	15	22.01.17 ~ 22.12.16
9	(교원공통) 기초학력향상을 위한 체험활동의 이해와 지도 방법 - 초,중학교 학습지원대상 학생의 박물관,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원격	600	15	22.01.17 ~ 22.12.16
10	2022 초등 기초학력 학습지원 담당 교원 역량 강화 직무연수	대면	60	15	22.02.18 ~ 22.02.23
		대면	50	15	22.04.13 ~ 22.04.19
		대면	40	15	22.09.14 ~ 22.09.20
		대면	40	15	22.09.21 ~ 22.09.27
11	중등 기본학력 전문가되기 직무연수(공통)	원격	6	67	22.04.11 ~ 22.04.13
12	중등 국어 기본학력 전문가되기 직무연수(1,2기)	대면	12	46	22,04.19 ~ 22.05.04
13	중등 수학 기본학력 전문가되기 직무연수(1,2기)	대면	12	44	22.04.14 ~ 22.04.25
14	중등 영어 기본학력 전문가되기 직무연수(1,2기)	대면	12	58	22.04.19 ~ 22.05.12

붙임 3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555

제안연월일 : 2023. 2. 14.
제 안 자 :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장

1. 제안이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학습 결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기추진 중인 기초학력 보장 지원의 체계화와 내실화를 유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1조~제2조)

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교육감은 매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 진단평가 현황 및 결과의 공개, 학습지원 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6조~제9조)

마. 기초학력 보장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기초학력지원센터 및 기초학력보장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제12조)

바. 기초학력 보장 지원 정책에 기여한 사람 또는 학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초학력 보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내 학생의 학력 신장과 학습지원대상 학생에 대한 지원을 내실 있게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서울형 기초학력"이란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교과별 성취 기준을 의미한다.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을 시행하고, 적정 수준의 학급 당 학생 수 유지를 포함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기초학력 정책에 대한 평가지표 및 결과
3. 기초학력 진단검사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에 관한 사항
5. 학습지원 담당교원 양성에 관한 사항
6. 학습지원대상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연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 방안
8. 제11조에 따른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있어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평가와 내실화를 위한 지표를 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서울형 기초학력) ① 교육감은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과 서울의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서울형 기초학력의 내용과 수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서울형 기초학력의 진단과 지도를 위한 교원 연수와 교재 개발, 학생 대상 학습·행동·정서의 종합적 지원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 ①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장려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학교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기초학력 진단검사 현황 및 결과 공개) ①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결과를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기초학력 보장법」 등에 따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 일자, 시행 과목, 응시자 수 등의 현황을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한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지원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 및 상담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심리 진단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습 이력을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연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이 기초학력 보장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 조정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지역사회 연계)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대학, 초·중등교육 관련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지원청별로 지역기초학력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2조 (기초학력보장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보장지원위원회(이하 “기초학력보장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기초학력보장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4조의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그 밖에 기초학력보장지원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 (포상) 교육감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실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결과 공개 등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학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4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 의견 검토 및 법률자문 결과 요약('23.1.)

위원회 제안 조례안 관련 교육청 의견 제출에 대한 검토

□ **조례안명 :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교육청 의견 제출 개요 및 검토 결과**

○ 추진 개요

일자	내용
'22.12. 8.	학력향상특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22.12.15.	조례안에 대한 1차 의견 제출 (교육청→시의회) - 관련 :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19601(2022.12.15.)
'22.12.21.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자문 요청 - 내용 : 조례안 제7조(기초학력 진단검사 및 현황 공개)에 대한 위법성 여부
'22.12.29.	위원회 제안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시의회→교육청) - 관련 : 교육전문위원실-23575(2022.12.29.)
'22.12.30.	입법·법률고문(3명) 자문 결과 회신 - 공통적으로 기본권 침해 우려가 없다는 의견이었고, 학교운영위원회 보고 및 홈페이지 공개와 관련해 3명 중 2명은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23. 1.10.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교육청→시의회) - 관련 : 서울시교육청 대외협력담당관-195(2023.1.10.)

○ 위원회 제안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 주요 의견

- 조문 내용이 「기초학력 보장법」의 취지 또는 목적과 상이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수정 또는 삭제, 추가 검토가 필요
  -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정의), 안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1항 및 제3항, 안 제6조(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 제1항 등
- 교육감의 고유권한 또는 판단영역을 침해하거나 전국적으로 통일된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조례가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
  - 안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6조(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 제2항 등

○ 검토 결과 : 수용 1건

- 수용(1) : 안 제9조 조문명 변경

원안	수정안
제9조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 및 양성**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지정할 수 있다.

□ **집행기관 주요 의견에 관한 검토 결과**

○ 조문 내용이 「기초학력 보장법」의 취지 또는 목적과 상이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수정 또는 삭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 조례안은 목적 규정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 「기초학력 보장법」과 동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아니라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다루는 것**이므로, **법의 취지와 크게 차이가 있거나 배치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충분히 규정할 수 있는 사항**임.
- 또한, 「지방자치법」 제28조가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정의 범위(법령의 범위에서)는 "제정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고,[1] 조례안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조례의 규정 취지와 목적, 효과, 양자 사이의 모순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므로[2] **법령에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조례 제정이 불가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음.**

○ 다수의 조문에 대해 "교육감의 판단 영역이므로 조례 제정이 불가"하다거나 "교육감 고유권한의 침해" 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 조문의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하는 것과 관련하여,

- 「지방자치법」 **제2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에 따라 제한되거나 법령과 배치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자치사무 또는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47조가 규정하는 지방의회의 권한(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은 존중**되어야 함.
- 참고로 현행 판례 등을 종합해보면 자치법규 입안 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인사나 행정기구 설치, 예산편성 권한 등에 한정됨.[3]
- 더욱이 교육청이 주장하는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정책에 대한 평가지표의 설정과 관리, 결과 공개 등이 전국 단위에서 통일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무는 아니며,** 기초학력 보장정책이 전국에서 통일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무라면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기초학력 보장법」이 규정할 이유가 없음.

□ **조문별 세부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 [붙임] 참조**

1)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44쪽 참조.
2)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3) 위의 책, 54-66쪽을 참조.

[붙임] 조문별 세부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조문	교육청 의견	검토 의견
제1조(목적)	• 일반 학생의 학력 신장은 모법(「기초학력 보장법」, 이하 법)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학력 신장" 표현을 삭제함.	**미수용** • 동 조례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닌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다루는 것이므로 **목적 규정 자체가 법의 내용에 구속을 받지 않음.**[4]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법령이 존재하더라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 목적에 기해 규율하는 내용이 통일적 처리가 필요하거나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제정 가능[5] • 또한, 학생 전체의 **학력 신장은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통해 달성해야 할 궁극적 목표**라는 점에서 상관도가 낮다고 볼 수 없음.
제2조(정의)	• 시행령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이 정한 최소한의 성취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교육감이 정한 교과별 성취기준'으로 서울형 기초학력을 정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미수용** • 동 **조항은 이미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성취기준임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음. • 교육부의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3~'27)」 역시 "교육과정을 통해 갖춰야 하는 **읽기·쓰기·셈하기 및 이와 관련한 교과'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제시**하므로[6] 교과별 성취기준으로 정의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 제1조와 상동(법과 시행령이 기초학력 보장에 목적을 두고 있어 교육감에게 학력 향상에 대한 책무를 두는 것을 부적절함.	**미수용** • 제1조에 대한 검토의견과 동일

4) 자치법규 목적 규정의 표현방식은 크게 ① 상위법령과 관계없이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경우와 ② 상위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을 위하여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85쪽)

조문	교육청 의견	검토 의견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시행계획에 들어갈 세부내용은 교육감이 결정해야 할 사무로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법의 취지와 지방교육자치제의 반할 우려가 있어 수정이 필요함. • 제2항 제2호, 제3항이 규정하는 기초학력 정책에 대한 평가 기준 및 지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처리가 요하는 사무이므로 조례 제정이 불가	**미수용** •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지방의회는 자치입법권을 가지며, 현행 **판례상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견제·균형의 원리를 적용받는 고유권한은 인사, 조직, 예산편성·집행권 정도**임을 감안할 때 시행계획 내용을 정하는 것은 가능 •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 **조례는 법의 내용과 모순되거나 위반되지 않는다면 구속되지 않으므로** 제정에 문제가 없음. •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평가지표를 설정, 관리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통일해 처리해야 할 사무라고 할 수 없음.
제5조(서울형 기초학력)	• 제1항은 서울형 기초학력을 역량과 서울의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는바, 이는 조례상 정의와 충돌함. • 제2항은 안 제8·9조와 유사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미수용** • **시행령 제2조제3항은**[7] **"지역 실정에 맞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의 세부 내용"을 교육감이 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바, 조문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임. • 제2항 역시 서울형 기초학력이 전국 단위 기초학력과 별도의 개념이라면, 이에 대한 교보재 개발과 교원 연수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6)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2022.10.),「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 8쪽.
7)「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제2조(최소한의 성취기준 등)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의 세부 내용을 정할 수 있다.**
8)「초ㆍ중등교육법」제32조(기능) ①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조문	교육청 의견	검토 의견
제6조(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	• 제1항은 법령에 없는 내용이며, 확대하여 해석할 여지가 있어 추가적으로 문구 검토가 필요 • 제2항과 관련하여 진단검사를 장려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교육감의 판단 영역이고, 조항과 법이 추구하는 목표가 상이하여 내용상 적절하지 않으므로 삭제	**미수용**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례안은 위임 조례가 아니므로 **법령에 없다고 하여 무조건 해당 사항을 규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님.** • 교육감은 자치법규를 포함한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행위를 해야 하는바, **특별한 경우나 조항이 없이 교육감의 판단 영역이라는 이유로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것을 매우 부적절**함.
제7조(기초학력 진단검사 현황 및 결과 공개)	• 제1항은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이 없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 상위법령에도 부존재하는 내용이며, 검사결과 공개에 대한 학부모 동의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 • 제2항은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없고, 법이나 시행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삭제 • 제3항은 일제고사와 달리 시행일자를 특정할 수 없는 진단평가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며, 진단검사 시행 현황에 대한 시의회 제출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의회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삭제가 필요	**미수용** • 입법·법률고문 자문 결과, 조문에 따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보호 등 기본권 침해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기초학력진단검사 현황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8]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으며, **동 조항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규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됨. • 유사 사례에 대한 법제처 의견제시 등을[9] 종합할 때 **보고의 경우** 반드시 시의회 의결이나 의견에 일률적으로 따라야 하는 등 **법적 구속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보고를 통해 집행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으므로** 의회가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9) 시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현황과 이행 점검결과 등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부산광역시 요청, 의견16-0149, 2016.6.17. 회신)

조문	교육청 의견	검토 의견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지원 등)	• ‘외부전문기관’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여 동 표현을 삭제하거나 기관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 • 학습이력 보관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신중히 이뤄져야 함.	**미수용** •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제3항[10] 역시** 별도의 표현 없이 ‘학교 외부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9조(학습지원담당교원의 지정 및 양성 등)	• 교원양성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를 준용해야 하는바, “양성”이라는 표현의 삭제 필요	**수용** • 의미상 표현의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나 **‘교원양성’이 “교원을 선발하여 가르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조문 제목을 “제9조(학습지원담당교원의 지정 등)”으로 수정하고자 함.
제10조(지역사회 연계)	-	-
제11조(기초학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법 상 센터는 지정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운영 방법은 교육감이 정하는 것이므로 제1항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표현을 삭제 • 법과 시행령에서는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시도별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3항은 삭제	**미수용** • 교육청은 이미 서울기초학력지원센터를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고, 법 제10조제1항은[11] “지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할뿐, 설치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않은바, 현행으로 유지함. • 제3항에서 규정한 **지역기초학력지원센터는 법에 규정된 센터와 별도의 센터**로, 법의 취지나 내용상 상충하거나 위반되지 않으므로 규정 가능함(원안 유지). - 이미 지역청별로 학습도움센터가 설치·운영된 상황도 고려
제12조(기초학력 보장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

조문	교육청 의견	검토 의견
제13조(포상)	• 진단검사 결과 공개에 따른 포상은 학교 반발이 우려되는 내용 • 조례안 목적을 고려하여 "기초학력 보장지원에 이바지한 사람"으로 표현을 수정	**미수용** • 동 조문에서 열거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 실시 등에 이바지한 사람은 **포상대상자를 특정하기 위한 예시에 불과**함. • **기초학력 보장 대책의 핵심은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교육·지원, 지속적 관리 등**임을[12] 감안할 때 진단검사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도 충분히 포상 대상이 될 것임.
제14조(시행규칙)	-	-

부산시에서는 시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추진현황과 이행 점검결과를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함)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의 쟁점은 부산시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권한 배분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중략)

부산시 조례안은 시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이후에 그 추진현황과 이행 점검결과를 시의회에 '사후'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장이 시의회에 보고를 한 후 반드시 시의회의 의결이나 의견에 일률적으로 따라야 하는 등 법적 구속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시의회가 시장의 업무나 권한행사에 개입하는 다른 규정은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취지 참조), 또한 업무협약의 내용이 향후 부산시의 예산지출이 수반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 권한은 지방의회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권한이 지방의회에 유보되어 있으므로, 시장의 업무협약 추진현황 등에 대한 사후 보고가 시의회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심의를 보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부산시 업무협약 추진현황과 이행 점검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업무협약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시정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부산시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와 같이 시장이 업무협약 추진현황과 이행 점검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거나 관계법령에 직접적으로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0)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③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한 교육·상담을 실시하거나 학교 외부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1) 「기초학력 보장법」 제10조(기초학력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 제도 개선·연구, 학습지원대상학생 실태조사·지원 및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성과 관리 등을 위하여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12) 교육부의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은 기초학력보장정책의 핵심 과제를 진단과 지원, 예방과 기반 구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초학력보장법」 역시 기초학력진단검사를 별도의 조문으로 다루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기초학력진단검사 시행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는 부분 역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 제7조 관련 법률자문 결과(요약)

☐ 법률자문 요청 사항

○ 기초학력 진단평가의 학교 또는 지역 단위 결과 공개가 학생(또는 학부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의 여부 (안 제7조제1항 관련)

○ 학교장에게 매년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안 제7조제2항 관련)

☐ 관련 조문

제7조 (기초학력 진단검사 현황 및 결과 공개) ①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결과를 공개할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 일자, 시행 과목, 응시자 수 등의 현황을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 매년 보고하고, 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자문 결과(요약)

○ 조례안 제7조에 대해 3명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다만, 학교운영위원회 보고 및 홈페이지 공개에 대해서 2명은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지만, 1명은 교육감 권한 침해 및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

☐ 법률자문 의견(세부)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침해 여부 관련,

의견	자문의견
A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된다는 대법원 판시에 따라 교육청이 주장하는 '사생활 침해' 등은 다루지 않음 ○ 동 조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는 "지역별 또는 학교별 결과 공개로 인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는지"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으나, **지역별 또는 학교별 결과만을 공개한다고 하여 특정 개인의 정보가 식별될 가능성은 낮으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는 아닌 것으로 판단 - 학교식별정보를 포함한 수능시험 정보 공개가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대법원 2010.2.25. 선고 2007두9877 판결) ※ 조례안 제·개정 관련 보충 의견 - 안 제7조제1항에서 공개 대상 정보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안 - 안 제7조제1항을 보강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기초학력 보장법 등 관련 상위법령에서 요구하는 정보공개 절차 또는 요건을 준수"하도록 단서 또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B	○ 학교 또는 지역별 현황, 진단검사 시행 현황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가공한 자료로,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결과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현황과 학운위 보고 여부'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책적 목적(공익)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또한, 동 조례안에서 논의되는 자료(정보)가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사생활 침해에 대해 논의할 이유가 없으며, **교육관련 정보의 공개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위반도 아니라고 사료** ※ 조례안 제·개정 관련 보충 의견 - 안 제7조제1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 "교육감은 학생의 학력 신장과 학습지원 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을 내실있게 전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법 제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시행한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의견	자문의견
C	○ **학교 또는 지역별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음** ○ 또한, 학교 또는 지역별 결과가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에 따라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 역시 **"학력 신장을 위한 통계 관리, 공개"라는 취지를 고려**하면, 동 조례의 규정 수준은 **법익의 균형성이 고려된 수단**이고, 개인정보 침해 수준도 낮다고 판단 ○ 〔참고〕 법학전문대학원의 학교별 합격률 공개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학교별 합격률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부당하다"고 판단(서울행정법원 2017.11.2. 선고 2017구합7034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누80822 판결로 확정)

○ **학교운영위원회 보고 및 학교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관련,**

변호사	자문의견
A	○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이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볼 때, 진단검사 현황의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교육감의 전속적인 권한에 사전적·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진단검사 실시에 대한 권한 침해 및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
B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여부 역시 입법 취지와 법률에 규정된 공시정보 범위(법 제5조제1항 등)를 감안할 때 **동 법률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광범위한 정보공개를 상정**하고 있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14호는 학교운영위원회 보고, 심의 사항으로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개정에 따라 심의사항이 될 수 있으며, **동 사안이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목적에도 배치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사료** ※ 조례안 제·개정 관련 보충 의견 - 안 제7조제2항 후단의 '그 결과'를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로 오독할 수 있으므로, '그 결과'를 "보고한 결과"로 수정할 것을 제안
C	○ 우선, **동 조문에 따라 주민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방자치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사료 ○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14호는 학교운영위원회 보고, 심의 사항으로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변호사	자문의견
	있어 법령에 없는 의무를 부과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

○ **기타 의견**

- 기초학력진단검사 지역·학교별 결과 공개가 학교의 서열화, 낙인효과를 조장하고 지역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와 관련하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전수조사, 고교등급제 폐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B)

  ※ 다만, 기초학력 진단평가 시행 현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부분은 학교 내부의 운영 사항에 관한 사항으로서, 낙인효과나 위화감 조성 문제와 직접 관련은 없음

붙임 5	조례안 재의요구 사유에 관한 검토자료('23.5.)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재의요구 사유에 대한 검토(안)

☐ 교육감의 고유 권한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관련,

○ (교육청 의견)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교육감이 행사하는 기관위임사무로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는 이상 조례 제정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조례 제정이 불가함.

○ (검토 의견 ①)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 전국적으로 통일된 처리가 요구되는지의 여부, 경비 부담과 최종 책임 귀속의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13] 동 사무는 아래의 사유에서 기관위임사무로 볼 수 없음.

〔표 1〕 기관위임사무 판단기준에 따른 재의요구 사유의 타당성

구분	재의요구 사유의 타당성
관계 법령의 규정 형식	• 「기초학력 보장법」은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대해 국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를 주체로 하여 관련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성질을 모두 가진다고 판단해야 함. ※ 법제처는 법령에서 사무 시행의 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병렬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두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규율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14]
사무의 성질	• 기초학력 보장 지원은 교육감의 관장 사무 중 하나인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15] • 유사 특성이 있는 학습부진아에 관한 관리 역시 「초·중등교육법」에 학습부진아에 대한 관리 역시 국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 주체로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13)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울진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산업시행에관한조례무효확인청구의소]
14)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32-33쪽.)
1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16) 제318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주요업무보고, 120쪽 참조.

구분	재의요구 사유의 타당성
사무의 경비 부담 주체	• 「제318회 임시회 주요업무 보고자료」에[16] 따르면, 2023년 본예산 기준 '초등 기초학력 보장' 예산 466억여 원 중 193억여 원(41.4%), '중등 기초학력 보장' 예산 332억여 원 중 97억여 원(29.2%)은 자체 재원임. ⇒ 기관위임사무의 경비 부담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개념을 고려할 때 기관위임사무라고 단언할 수 없음.

○ (검토 의견 ②)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 제28조에 규정된 조례 제정의 범위(법령의 범위에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17]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데이터 공개, 활용, 관리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례안 내용에는 법률적 쟁점이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18]

□ 「교육기관 정보공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관련,

○ (교육청 의견) 「교육기관 정보공개법」은 학년·교과별 학습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학교명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지역도 학교급별로 제한하고 있는바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한 동 조례안은 이를 위반한 것임.

○ (검토 의견 ①) 안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 공개는 「교육기관 정보공개법」 제5조에서 규정한 공시대상정보와 구분됨.

〔표 2〕 「교육기관 정보공개법」과 조례안에 따른 성적 공개 간 차이

구분	「교육기관 정보공개법」 상 학교·교과별 학습에 관한 정보공개	조례안에 따른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 공개
공시 주체	학교장	교육감
공시 시기	시행령 〔별표 1〕 등에 따라 공시 시기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	교육감 재량 사항 (조례안은 특정 조건이나 내용을 요구하지 않음)
공시 수준 (내용), 방법 등		

-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데 있어 「교육기관 정보공개법」에 근거한 정보공시 시 학교장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교육감 역시 관계 법령의 취지를

17)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44쪽 참조.
18) 조례안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조례의 규정 취지와 목적, 효과, 양자 사이의 모순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함.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고려하여 동 조례안에 따라 결과를 공개하면 될 것임.

○ (검토 의견 ②) **대법원은 수학능력시험 결과 공개와 관련하여 수능시험 결과 공개의 부작용이 결과 공개에 따른 실익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도 있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음.**

- 대법원은 "학교 간 격차와 사교육 의존도가 심화된 상황에서 수능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보다 이를 공개하여 현실 개선에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고, 학교선택권 보장 및 학교 책무성 제고 등이 기대된다"는 의견이 제시

- 대법원 판례 주요 부분 (대법원, 2007두9877, 2010.2.2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

> 그런데 학교식별정보를 포함하여 수능시험정보가 그대로 공개될 경우, 시험성적으로 학교 간 서열화가 이루어지면서, 수능시험과 관련성이 높은 교과영역 위주로 교육과정이 편중되고, 학생·학부모들의 경쟁 심리나 불안감이 자극되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며, 성적 상위권 학교로 학생·학부모들의 선호가 집중되는 반면, 성적 하위권 학교는 입학기피대상이 되고, 부득이 성적 하위권 학교에 다녀야 하는 학생들은 좌절감을 느껴 학습의욕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위와 같은 수능시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지장이 생길지도 모른다.
>
> 그러나 한편으로 학교 간 학력격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이미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학교식별정보를 포함한 수능시험정보를 비공개하는 것보다 이를 연구자 등에게 공개하여 위와 같은 현실의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정보공개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학교식별정보를 포함한 수능시험정보의 공개는 교육현실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과 교육정책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을 가능하게 하여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의 개선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교육정책 수립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각 시·도에서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관하여 선 복수지원, 후 추첨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제한적이나마 보장하고 있는바, 학교식별정보를 포함한 수능시험정보를 연구자 등에게 공개하면, 이들을 통하여 **학생 및 학부모들도 학교 선택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 및 학부모들의 학교 선택을 통하여 **선호 대상 학교가 발견되면, 다른 학교들도 그 선호요인을 분석하여 적극 수용하거나 차별화된 전략으로** 학생·학부모의 선택을 유도하는 양상이 나타나 사회 전반에 걸쳐 **효율적인 학교 모형이 확산·발전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식별정보를 포함한 수능시험정보의 공개에 의하여 학교의 책무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
> 그렇다면 적어도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연구 목적으로 수능시험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공개로 인하여 초래될 부작용이 그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공개로 인하여 수능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붙임 6	특별위원회 관련 보도자료

자료 제공 : 2022. 09. 16.(금)
이 보도 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이경숙 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의원명 :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장수 : 5장

시 의 원	이경숙	010-7459-3057
의원연구실		02-2180-8461

이경숙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 13일(화), 서울특별시의회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위원장: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 부위원장: 이승복 의원(국민의힘, 양천4),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
- 서울형 기초학력 보장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 도출에 집중할 것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이하 "학력향상 특위)"는 지난 13일(화)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으로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 부위원장으로 이승복 의원(국민의힘, 양천4)과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을 각각 선출했다.

□ 서울특별시의회는 제11대 의회 출범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여 서울교육 혁신을 위한 의지를 표명한 데 이어 학력향상특위를 첫 번째 특별위원회로 구성함으로써 서울교육 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 학력향상특위 출범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와 사교육비 증가 추세,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전환에 따른 수업 결손 등을 근거로 초·중등교육 전반의 학력 저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전개된다는 측면에서 더욱 주목된다.

□ 앞으로 학력향상특위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학생의 학력 제고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정책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서울형 기초학력 보장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특히, 기초학력 진단평가체계 전반을 점검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의 기틀을 다지고, 학력 저하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혁신학교와 자유학기제 등을 포함한 서울교육정책 전반을 점검하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서울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적극적인 견해를 밝힘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 더불어 서울특별시의회가 8월 29일 의결한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진단평가 확대를 추진하는 상황과 맞물려 서울특별시의회가 기초학력 저하 문제 대응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 이날 학력향상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경숙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자 교육기관의 당연한 책무로서 다뤄져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서울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이어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승복 의원은 "학력 향상은 서울시의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한 민생문제이자 국가 전체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라는 측면에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겠다"며 소감을 밝혔고, 이용균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 등에 따른 학력격차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었다"며 기초학력 부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한편 학력향상특위는 이경숙 위원장과 이승복·이용균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고광민, 구미경, 문성호, 박강산, 박성연, 박유진, 성흠제, 송경택, 신복자, 왕정순, 이민석, 이종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2월 4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 참고로 이경숙 위원장은 경남 성산중학교에서의 교직 경험을 바탕으로 제5~8대 도봉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아동·청소년 활동과 교육사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제11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시정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붙임. 사진 자료 2매. 끝.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국민의힘

이경숙 의원 (국민의힘, 도봉구 제1선거구)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층 605호

Tel : 02) 2180-8461 Fax : 02) 2180-8465

E-mail : lks7459@naver.com

-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 도봉구의회 5~8대 의원(전)
- 윤석열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조직 지원본부 서울여성본부장(전)

붙임. 사진자료 2매.

자료 제공 : 2022. 10. 12.(수)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이경숙 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의원명 :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장수 : 4장

시 의 원	이경숙	010-7459-3057
의원연구실		02-2180-8461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 11일(화),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진행
- 기초학력 협력강사 운영, 서울런의 효과성 문제 등 중점적으로 다뤄져
- 이경숙 위원장, "산발적·중구난방 추진된 기초학력 정책에 대한 총체적 정비 필요…실효성 있는 기초학력 보장 정책 위해 적극적 활동 전개할 것"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숙, 도봉1)가 11일(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 이날 업무보고에는 학력 격차 해소, 학업성취도 향상 지원 등을 목적으로 개별 부서에서 전개되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문해력 저하와 기초학력 보장 문제 등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질의가 이뤄졌다.

□ 서울특별시는 오세훈 시장의 핵심 추진 정책 가운데 하나인 '서울런

(Seoul Learn)'과 '서울형 교육 플랫폼 구축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하였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과정 운영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협력 강사 운영, 학업성취도평가 시행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이하 "학력향상특위") 위원들은 여러 정책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문해력과 학업성취도 저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 특히, 위원들은 "혁신교육지구, 기초학력 협력강사, 랜선야학(대학생 온라인 멘토링), 서울런 등 다양한 학습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사교육은 여전히 확대되고 정책 성과는 모호하다"라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간의 협력 강화, 교육 소외계층 대상 학습 지원대책 강화 등을 강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 학력향상특위는 이번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 기초학력 진단평가 확대와 ▲ 학력 저하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는 혁신교육에 대한 재평가, ▲ 대학수학능력시험, 전국연합학력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학업성취도평가 데이터 구축, ▲ 문해력 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제안할 예정이다.

□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경숙 위원장(국민의힘, 도봉1)은 "코로나19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산발적이고 중구난방으로 추진되어 온 기초학력 보장정책의 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하고, "업무

보고를 통해 사업에 대한 총체적 정비와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실효성 있는 기초학력 보장 정책이 시행되도록 특위 위원들과 함께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한편, 학력향상특위는 이경숙 위원장과 이승복·이용균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고광민, 구미경, 문성호, 박강산, 박성연, 박유진, 성흠제, 송경택, 신복자, 왕정순, 이민석, 이종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2월 4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붙임. 사진 자료 2매. 끝.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국민의힘

이경숙 의원 (국민의힘, 도봉구 제1선거구)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층 605호

Tel : 02) 2180-8461 Fax : 02) 2180-8465

E-mail : lks7459@naver.com

-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 도봉구의회 5~8대 의원(전)
- 윤석열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조직 지원본부 서울여성본부장(전)

붙임. 사진자료 2매.

자료 제공 : 2022. 10. 20. (목)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이경숙 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의원명 :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장수 : 5장

시 의 원	이경숙	010-7459-3057
의원연구실		02-2180-8461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이경숙 위원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학력평가 회피 말고 즉각 전수평가 시행해야"

- 이경숙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입장문」에 대해 입장 표명
- '전수평가 반대' 주장하는 조희연 교육감의 태도에 유감…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30억 원으로 즉각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시행계획 수립해야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이경숙 위원장(국민의힘, 도봉1)은 지난 13일 발표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입장문」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서울특별시의회가 편성한 30억 원을 토대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즉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 이경숙 위원장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일제고사 시절의 부작용'과 '학교자치, 기초학력 보장'이라는 명분에 숨어 많은 학부모와 시민들이

우려하는 학력 저하라는 본질적 문제를 외면하고, 의회의 추가경정 예산 심의 결과를 부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 무엇보다 이 위원장은 “조희연 교육감이 ‘일제고사를 통해 수많은 부작용을 경험했다’며 전수조사 반대를 주장한 데 대해 일제고사의 부작용은 전수평가 결과의 활용 방식에 따라 발생한 문제로, 이것이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진단 목적으로 시행하는 전수평가를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하였다.

□ 특히, 일제고사를 통해 학교별 성적이 공개되는 문제는 대외적으로 시차를 두고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학교별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 등을 공시하는 방식을 통해 충분히 경쟁을 완화할 수 있고, 학교 평가로 인해 교육 현장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부분 또한 평가 결과 도움이 필요한 학교에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즉, ‘일제고사 부작용의 재연이 우려된다’는 조희연 교육감의 주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수평가를 거부함으로써 학력 저하에 대한 비판을 회피하고자 하는 핑계에 불과한 것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 이어 이경숙 위원장은 현재 상황을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기초학력 보장 대책으로 매년 수백억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출하는 상황에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 없이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연 무엇이 서울교육 발전에 바람직한

지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 스스로가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 이러한 지적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기초학력 보장 예산(7월 말 기준, 특별교부금 포함)으로 단위학교 기본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154억여 원, 초등 1～2학년 기초학력 협력강사 79억여 원, 초등 교과보충집중 프로그램(점프업 · 키다리샘) 135억여 원 등 수백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성과평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 더욱이 이 위원장은 “조 교육감의 ‘전수평가 거부 입장문’이 지난 8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초 · 중 · 고 각 1개 학년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회가 30억 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고 이를 교육청이 수용한 상황에서 나왔다는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 이어 “30억 원의 예산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등 기존 평가 체계는 유지하되 지역 단위 기초학력 수준을 진단하여 서울교육정책 수립의 기초로 삼고, 학력 저하에 대한 학부모와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안된 것”임을 명확히 한 뒤,

“서울시교육감은 관련 예산 증액 편성에 본인 스스로 동의했다는 점을 망각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전수평가를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 이경숙 위원장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앞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기초학력 진단을 위한 학업성취도 전수 평가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시행 중인 기초학력 보장 정책 전반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전개하여 서울 학생의 학력 제고에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국민의힘

이경숙 의원 (국민의힘, 도봉구 제1선거구)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층 605호

Tel : 02) 2180-8461 Fax : 02) 2180-8465

E-mail : lks7459@naver.com

-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 도봉구의회 5~8대 의원(전)
- 윤석열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조직 지원본부 서울여성본부장(전)

붙임. 사진자료 1매.

▲ 이경숙 위원장이 지난 10월 11일(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14회 임시회 폐회중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2022. 12. 8.(목)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이경숙 위원장(도봉1, 국민의힘)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매수: 3매

시의원	이경숙	02-2180-8461
의원연구실	605호	02-2180-8462

서울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조례안 제정된다 !

-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 이경숙 위원장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 마련...서울의 모든 학생을 기초학력 저하의 늪에서 구제하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본연의 역할임을 강조"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12월 8일(목)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동 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 이번에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제안된 동 조례안은 교육감이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며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진단검사의 시행과 평가 결과 공개는 학교장의 재량 사항이나 금번 조례에서는 학교장의 자율적인 참여 확대를 위해 행·재정적인 인센티브나 포상을 규정하였다.

□ 아울러 동 조례안은 성과평가 없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현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지원 정책의 현실을 직시하여 서울의 특성을 담은 '서울형 기초학력'의 운영 근거를 명시하였고, 기초학력

보장정책 시행에 있어 평가지표를 설정·관리하도록 하는 등 기초학력 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내실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별위원회는 현재 기초학력 진단을 위해 편성된 예산의 합리적 집행과 함께 내년에 있을 추가경정예산 중 행·재정적 인센티브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동 조례의 효과성 제고에 앞장설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위원회는 동 조례의 제정으로 기초학력 진단은 물론 학생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습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 한편 이날 특별위원회는 2023년 2월로 종료 예정인 활동기간을 2023년 8월 초까지 6개월 연장할 것을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이경숙 위원장은 금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서울시 내 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는 동시에 기초학력 진단평가 전수 시행 등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회의를 마친 이경숙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교육 책임제의 진정한 시작은 기초학력 보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점차 심각해져 가는 기초학력 저하의 고리를 끊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해나갈 수 있도록 기초학력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이어 이 위원장은 “앞으로 기초학력 진단평가 확대와 연계한 학력향상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교육행정에 반영하고,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학교의 서열화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세심하게 챙길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 한편, 이번에 제안된 조례안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315회 정례회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층 605호

Tel : 02) 2180-8461 Fax : 02) 2180-8465

E-mail : lks7459@naver.com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도봉구의회 5~8대 의원(전)

붙임. 사진자료 1매.

▲ 이경숙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도봉1)이 8일 오전에 진행된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22.(목)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이경숙 위원장(도봉1, 국민의힘)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시의원	이경숙	02-2180-8461
의원연구실	605호	02-2180-8462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매수: 3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22.12.21. 관련)

자의적인 회의규칙 해석으로 학력향상 특위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의 자가당착적인 행태에 자성을 촉구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이경숙 위원장(국민의힘, 도봉1)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특별위원회의 기능을 왜곡하고 자가당착적 행태를 보인 더불어민주당의 보도자료(22.12.21.)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학력 향상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 한편 이경숙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보도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특별위원회는 조례안의 발의 권한이 없다"는 것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0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의미하며, 회의 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 위원회는 두 위원회 모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이는 행정안전부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는 사항(「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 2020년. 224쪽~225쪽)으로, 특별위원회가 조례안의 발의 권한이 없다는 주장은 기본 조례와 행정안전부의 판단을 고려하지 못한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

□ 두 번째로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특별위원회에서 제의한 조례안의 심사 불가능”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22조는 “위원회에서 제의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은 이미 조례안을 성안하고 제안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여 본회의에 바로 상정한다는 의미이다.

□ 다만, 회의규칙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은 의장이 재량에 따라 동 특별위원회가 아닌 다른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할 수도 있다.

□ 따라서 회의규칙 제22조를 근거로 해당 조례안의 심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동 회의규칙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자 조례에 대한 무지에 따른 것이다.

□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회의규칙 제54조는 의회에 접수되어 위원회로 회부된 성립안건을 심사하는 일련의 절차로서 동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서는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나,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동 규칙 제54조제5항 단서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나,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규정은 위원회안의 경우 대표발의 의원이 없다는 점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규정으로 해석되며, 위원회안에 대해서는 동 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2011년 동 규칙 개정 후 위원회에서는 동 규칙 제54조제5항을 적용하지 않아 위원회 제안 조례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 다만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의회에 접수되어 의안번호를 부여받은 시장, 교육감이 제출한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동 규칙 제54조제5항의 단서를 적용하여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해 왔다.

따라서 만약 그동안 의회에서 추진한 동 규칙내 단서 조항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이견이 있다면 동 규칙에 대한 개정안 제출을 통해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경숙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을 마무리하면서 “금번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 무효 주장은 회의규칙에 대한 무지와 오만함이 낳은 억지 주장에 불과한 것”이라 말하며, “여야 구분 없이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할 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폄훼하고 자의적 해석으로 특별위원회의 발목을 잡는 행태에 대해 천만 서울시민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 끝으로 이경숙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특위의 목적과 기능을 경시한 채 일괄 사퇴를 위한 무의미한 명분 쌓기를 이제라도 그만두고 적극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특별위원회 적극 참여를 촉구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국민의힘

이경숙 의원 (국민의힘, 도봉구 제1선거구)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층 605호

Tel : 02) 2180-8461 Fax : 02) 2180-8465

E-mail : lks7459@naver.com

-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 도봉구의회 5~8대 의원(전)
- 윤석열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조직 지원본부 서울여성본부장(전)

2023. 2. 15.(수)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이경숙 위원장(도봉1, 국민의힘)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매수: 4매

시의원	이경숙	02-2180-8461
의원연구실	605호	02-2180-8462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위, "2023년을 기초학력 보장 제도 마련의 원년으로 삼을 것"

-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2023년 첫 회의 개최!
- 2023년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 정책 업무 보고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숙, 이하 학력향상특위)는 2월 14일(화) 2023년 첫 회의를 열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기초학력 조례안」)을 제안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서울런(Seoul Learn)과 서울시의회 요청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위한 예산 30억 원의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학력향상특위가 제안하는 「기초학력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 특히, 이번 업무 보고에서 위원들은 서울시 대상으로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런 사업의 내실화를 주문했고,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는 학년 단위 교과 중심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 집행계획의 수립을 강조하였다.

□ 또한, 「기초학력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렴된 교육청 담당 부서와 산하 교육행정기관, 일선 학교의 의견 및 조례안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조문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부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조례안을 위원회 차원에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 참고로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학력향상특위는 지난 2022년 12월 8일(목) 기초학력 진단평가 시행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및 포상,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결과 공개 및 시행 학교에 대한 지원, 서울형 기초학력의 운영, 기초학력 보장 지원 정책의 평가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학력향상특위 차원에서 제안한 바 있다.

□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에 제안된 「기초학력 조례안」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시행 등 기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유지하되, 진단평가 결과 공개에 있어 관련 법령의 준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명시하는 한편, 진단평가 시행 현황에 대한 학교 홈페이지 공개를 학교장의 재량사항으로 위임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다.

□ 특별위원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서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의회 차원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학력 진단과 학습지원,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된 기초학력 보장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학력 수준에 맞는 학습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회의를 마치며 이경숙 위원장은 “올해는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에 따른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 시행된 첫해로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정책에서 매우 의미있는 해”라면서 “서울시의회 역시 2023년을 기초

학력 보장의 원년으로 삼아 학력 향상을 위한 시책 구현에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이어 이 위원장은 "조례 제정 이후에도 진단평가 시행 및 결과 공개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서울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기초학력 진단평가 구성 등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력향상특위 차원에서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덧붙였다.

□ 한편, 학력향상특위는 이경숙 위원장과 이승복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고광민, 구미경, 문성호, 박성연, 송경택, 신복자, 이민석, 이종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8월 4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붙임. 사진자료 1매.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층 605호

Tel : 02) 2180-8461 Fax : 02) 2180-8465

E-mail : lks7459@naver.com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도봉구의회 5~8대 의원(전)

붙임. 사진자료 1매.

2023. 3. 10.(금)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이경숙 위원장(도봉1, 국민의힘)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매수: 5매

시의원	이경숙	02-2180-8461
의원연구실	605호	02-2180-8462

서울 학생 기초학력 진단 · 지원 강화된다!

- 10일(금),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의결!
- 진단평가 시행 학교 인센티브 지급, 진단검사 현황과 결과 공개 등 근거 마련
- 이경숙 위원장 "학교가 기초학력을 보장한다는 것은 원칙과 상식…조례 제정을 넘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제안에 집중할 것"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결손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서울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 서울특별시의회 이경숙 의원(도봉1, 국민의힘)은 지난 2월 14일(화)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이하 학력향상특위, 위원장 이경숙)가 제안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사교육비 지출과 코로나19 및 원격수업에 따른 학습 결손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서 지방의회 차원에서 제시된 실질적인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 더욱이 학력향상특위가 활동을 시작한 지 8개월여 만에 도출된 가시적

성과이자 평가지표 강화 등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지원 정책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 이번에 본회의 문턱을 넘은 해당 조례안은 교육감이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학교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의 현황과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초학력 진단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기초학력 보장정책의 평가지표를 관리하도록 하여 매년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기초학력 보장정책의 내실화를 유도했다.

□ 이 외에 조례안은 '서울형 기초학력'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이미 운영 중인 지역학습도움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기초학력 보장지원 정책 전반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았다.

□ 금번 조례 제정에 대해 이경숙 위원장은 "교육청과 각급학교, 교육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바 있고, 여러 차례 법률 자문과 내부 검토 등을 통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조례안의 주요 요지는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나 학교, 지역에 효과적 지원을 하자는 것"이라며 일부에서 학교 서열화와 낙인효과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했다.

□ 특히,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 공개와 관련하여 "학생 개인의 정보는 철저히 보장되도록 조례안에 명시하고 있고, 구체적인 공개 방식과 내용, 수준에 대해서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의 서울 교육정책이 이념과 당위성에 기대고 있다면, 조례안을 통해 데이터와 학교 현실에 기반한 교육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이 위원장은 조례안이 적정 수준의 학급 당 학생 수 유지를 포함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감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기초학력 보장

법」에 따라 기초학력 진단평가 시행을 강제하고 있지 않음을 밝히면서 학교 현장의 우려도 충분히 반영했음을 강조했다.

□ 본회의를 마치며 이경숙 위원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들려오는 ‘금일’을 ‘금요일’로, ‘사흘’을 ‘4일’로 알고 있다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 “학교가 기초학력을 보장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원칙과 상식’이며, 오늘 조례안 의결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법체계를 갖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어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본 의원을 비롯한 학력향상특위 구성원 모두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면서 “조례 제정에 만족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 제안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덧붙였다.

□ 한편, 이경숙 위원장은 지난 9일(목)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과 기초학력 보장 지원 대책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통해 초·중·고 각 1개 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진단평가의 조속한 시행과 ‘(가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력개발원’ 설립을 제안하여 책임감 있는 기초학력 보장지원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 이는 앞으로 학력향상특위가 조례 제정을 넘어 전담 기구 신설 및 기초학력 진단검사 강화 등을 주요 의제로 삼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일하는 의회 구현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 도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붙임. 사진자료 1매.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층 605호

Tel : 02) 2180-8461 Fax : 02) 2180-8465

E-mail : lks7459@naver.com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도봉구의회 5~8대 의원(전)

붙임. 사진자료 2매.

▲ 이경숙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장(가운데)이 지난 9일(목) 이승복 학력향상특위 부위원장과 함께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과의 간담회를 갖고, 기초학력 보장 지원 정책 강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 이경숙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장이 10일(금)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진행하고 있다.

2023. 4. 4.(화)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이경숙 위원장(도봉1, 국민의힘)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시의원	이경숙	02-2180-8461
의원연구실	605호	02-2180-8462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매수: 3매

이경숙 위원장,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재의요구에 유감 표명”

- 이경숙 위원장, “서울시교육청 재의요구 사유는 비논리적 변명에 불과…서울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 위해 조례안 재의결 필요”

□ 이경숙 서울시의회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 위원장(도봉1, 국민의힘)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재의요구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의요구 절차에 따라 재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번에 재의요구가 이뤄진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평가 시행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및 포상,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결과 공개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서울형 기초학력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2월 14일(화)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장에 제안되어 3월 13일(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3일(월) 해당 조례가 교육감의 고유권한 침해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 이경숙 위원장은 금번 재의요구에 대해 먼저 “의회가 조례안 제정 과정에서 관련 부서와 학교 등으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고, 여러 차례의 법률 자문과 내부 검토를 거쳤다는 사실을 교육청이 잘 알면서도 재의요구를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면서 “교육청이 제출한 재의요구 사유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모순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개별 사유별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 반박했다.

□ 우선,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이고, 교육감에게 일정 부분을 위임한 기관위임사무로서 조례 제정이 이뤄질 수 없다’는 교육청의 주장에 대해 이경숙 위원장은 “「기초학력 보장법」이 지방자치단체에 기초학력 보장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감에게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초학력 보장 지원이 자치사무가 아니라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꼬집었다.

□ 또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이 없음에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조례 제정범위를 넘어선다’라는 교육청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 제정의 범위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라는 해석이 일반화되었음에도 법률에 대한 협소한 해석으로 조례 제정을 회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 끝으로 ‘조례안이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사항의 정보공개 범위를 규정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례안이 교육감에게 지역·학교별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개방식과 범위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공개범위는 학교 서열화와 현행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이 결정하면 될 사항임에도 '조례가 잘못되었다'며 교육감이 자신의 책임을 의회로 떠밀고 있다"고 질타했다.

□ 이경숙 위원장은 교육청의 재의요구에 대한 논평을 마무리하며 "조례는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필수적이고 최소한의 시책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재의결을 통해 조례 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조례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위원장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층 605호

Tel : 02) 2180-8461 Fax : 02) 2180-8465

E-mail : lks7459@naver.com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도봉구의회 5~8대 의원(전)

2023. 5. 3.(수)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이경숙 위원장(도봉1, 국민의힘)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매수: 3매

시의원	이경숙	02-2180-8461
의원연구실	605호	02-2180-8462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 이경숙 위원장, “이번 재의결을 통해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서울시의회의 의지 재확인한 것”

□ 서울특별시의회가 3일(수) 개의된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재의요구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 이번 의결은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 이후 재의요구안에 대한 첫 번째 재의결이다.

□ 이경숙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도봉1, 국민의힘)은 3일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재의요구 사유로 제시한 교육감의 고유 권한 침해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위반 소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 우선,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은 ‘기관위임사무’로서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는 서울시교육감의 재의 요구 사유에 대해 “해당 사무는 국가사무이자 자치사무로, 의회가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구체적으로 ① 「기초학력 보장법」이 국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고유 사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사항이라는 점, ③ 초등과 중등 기초학력 예산의 41.4%와 29.2%는 자체재원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라는 점, ④ 법제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주어로 하는 조항을 해석하면서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영역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 또한, 조례안이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결과를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교육기관 정보공개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재의 요구 사유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면서 “조례 제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 우선, 학교명을 익명화하여 공개하거나, 시행령에 맞춰 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공개하는 등 교육감이 관련 법령에 맞춰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조례안은 결과 공개 형식과 내용에 대해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 더욱이 2010년 대법원은 수학능력시험 결과 공개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력 격차와 과도한 입시 경쟁 등을 완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학교의 책무성과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수능시험정보 공개로 인하여 초래될 부작용이 그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항을 소개하며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 공개 역시 마찬가지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한편, 3일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서상열 의원(구로1, 국민의힘)의 찬성토론과 박강산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토론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이경숙 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억지 논리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례조차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서울시의회 역시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동 조례안의 재의결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층 605호

Tel : 02) 2180-8461 Fax : 02) 2180-8465

E-mail : lks7459@naver.com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도봉구의회 5~8대 의원(전)

2023. 5. 10.(수)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이경숙 위원장(도봉1, 국민의힘)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시의원	이경숙	02-2180-8461
의원연구실	605호	02-2180-8462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매수: 2매

이경숙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장,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대법원 제소에 매우 유감”

- 이경숙 위원장,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은 법령을 준수하며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의결…기초학력 보장 위한 조 교육감의 진정성에 의문”

□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공포를 거부하고 대법원 제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 이경숙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도봉1, 국민의힘)이 유감을 표명했다.

□ 이경숙 위원장은 “지난 9일(월) 서울시교육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의회가 재의결한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에 법률 위반 소지를 제기하며 대법원 제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면서 “법령을 준수하면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의결된 흠결 없는 조례에 대해 효력을 다투겠다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결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 그러면서 “소송에 소모될 비용과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기초학력 보장 지원 강화를 위한 대책 시행이 늦춰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또한, 이 위원장은 “조례안의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법률적으로 다투겠지만, 기초학력 보장 지원의 책임과 권한은 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있어 조례 제정 범위가 아니라는 조 교육감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거부하는 조 교육감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질타했다.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9일(월)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된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 침해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대법원에 재소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과 결과 공개에 대한 인센티브 및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형 기초학력의 근거를 신설하며,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이경숙 위원장은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명백하게 가려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저를 포함한 서울시의회 학력향상특위 구성원 모두는 조례안의 대법원 제소 여부와 관계없이 서울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층 605호

Tel : 02) 2180-8461 Fax : 02) 2180-8465

E-mail : lks7459@naver.com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도봉구의회 5~8대 의원(전)

2023. 6. 13.(화)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이경숙 위원장(도봉1, 국민의힘)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시의원	이경숙	02-2180-8461
의원연구실	605호	02-2180-8462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매수: 3매

이경숙 위원장, "기초학력 정책 내실 위해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는 불가피"

- 12일(월),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진행
-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서울 학생 문해·수리력 진단평가 추진 현황에 관해 보고 받아

□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이하 학력향상특위, 위원장 이경숙)가 12일(월) 회의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다.

□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의회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편성된 30억원의 예산으로 시행 예정인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평가'의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이 다뤄졌다.

○ 특히, 올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된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평가와 관련하여 평가 대상 설정과 추진 일정, 문항 개발 전반에 대한 점검과 질의응답이 중점적으로 진행되었다.

□ 학력향상특위 위원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하고 대법원 제소를 추진하는 등 기초학력 보장지원에 소극적으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질타하고,

서울 학생 문해·수리력 진단평가의 시행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경숙 학력향상 특위 위원장(도봉1, 국민의힘)은 “기초학력 특위가 제11대 서울시의회 첫 특별위원회로 구성된 이래 시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으로 기초학력 전담 부서가 신설되는 등 일부 진전된 조치가 있었다”면서도 “그럼에도 아직까지 우리 지역 학생이나 학교의 학습 수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 이어 이경숙 위원장은 “기초학력 보장에 있어 예산 규모나 정책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와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기초학력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적기에 필요한 곳으로 한정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진단 결과 공개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 한편, 대법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에 관해 이 위원장은 시의회에 의견 개진 기회조차 주지 않은 재판부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본안 소송에서 충분히 절차적 정당성과 기초학력 부진 실태의 심각성, 진단평가 결과 공개 등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층 605호

Tel : 02) 2180-8461 Fax : 02) 2180-8465

E-mail : lks7459@naver.com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도봉구의회 5~8대 의원(전)

【붙임1】 사진자료 2매.

▲ 이경숙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도봉1, 국민의힘)이 12일(월) 열린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12일(월) 제319회 임시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전경

2023. 7. 20.(목)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이경숙 위원장(도봉1, 국민의힘)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시의원	이경숙	02-2180-8461
의원연구실	605호	02-2180-8462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매수: 4매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1년여간의 활동 마무리

-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22년 8월부터 1년여간 활동 마무리
- 「기초학력 보장 조례」 대법원 제소 아쉽지만, 서울시교육청 내 기초학력 전담부서 신설, 서울 학생 학력 향상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등에 성과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이하 학력향상특위, 위원장 이경숙)가 7월 20일(목) 제7차 회의를 끝으로 지난 1년여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 이번 회의에서 학력향상특위 위원들은 그동안의 활동 내용을 정리한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학력향상특위의 활동 성과와 향후 과제 등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 특히, 위원들은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소하여 효력이 정지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서울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지원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대법원의 올바르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 이와 함께 위원들은 학력향상특위가 책임교육학년제 도입과 학력 진단 강화 등을 담은 교육부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전부터 선도적으로 기초학력 진단평가 학년별 전수 시행 등을 추진했다는 점과 서울시교육청 내 기초학력 보장지원 업무 전담부서 신설에 이바지했다는 점을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로 꼽으며, 앞으로도 시의회 차원에서 기초학력 보장지원 정책에 관한 관심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경숙 위원장(도봉1, 국민의힘)은 "진단평가 강화, 조례 제정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체계 확립 등이 시행되기 전에 활동이 종료되어 아쉽지만, 학력 향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하는 데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싶다"며,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함께해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서울교육을 위해 노력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는 소회를 밝혔다.

□ 한편, 학력향상특위는 이경숙 위원장과 이승복 부위원장(양천4, 국민의힘), 고광민, 구미경, 문성호, 박성연, 송경택, 신복자, 이민석, 이종태 위원 등 10명의 서울시의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2022년 8월 5일부터 업무보고, 조례안 제안, 서울형 기초학력 진단평가 시행·추진 관련 모니터링 등을 전개해왔다.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층 605호

Tel : 02) 2180-8461 Fax : 02) 2180-8465

E-mail : lks7459@naver.com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도봉구의회 5~8대 의원(전)

【붙임1】 사진자료 3매.

의회
이승복